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건택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370호

나. 제 안 자 : 신건택의원외 16명

다. 제안일자 : 2018년 2월 12일

라. 회부일자 : 2018년 2월 12일

2. 제안이유

서울시 근로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 조례상에 전태일 열사 기념 및 시민의 노동권익보호를 위하여 신설되는 "전태일 노동복합시설"을 추가함으로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별표의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에 "전태일 노동복합 시설"을 추가함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조례안의 개요

 동 개정안은 전태일 열사의 추모공간 조성과 서울시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'전태일 노동복합시설'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성 현황

- 서울특별시(이하 "시")는 2018년 11월 청계천변에 전태일 열사의 기념관을 조성하고 동시에 서울노동권익센터,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등 시민을 위한 노동시설들을 집약하는 '전태일 노동복합시설'(이하 "노동복합시설")을 개관할 계획임.
- 시는 지난해 5월 민간건물 매각을 시작으로 8월말 시장, 전태일 재단, 노동계, 종교계, 문화예술계, 학계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'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건립 추진위원회'를 발족하는 등 시설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노력해왔음.

〈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개요〉

○ 위치 : 종로구 청계천로 105(관수동 152-1)

○ 규모 : 지상6층, 대지면적 553.1 m² / 연면적 1,940.73 m²

○ 층별용도

구 분	면 적	용도		
]층	$402.38m^2$	전태일 기념 공간(수장고), 주차장, 기계실 등		
2층	$371.43 m^2$	전태일 기념 공간(공연장, 사무공간)		
 3층	$412.35m^2$	전태일 기념 공간(전시실, 체험장, 교육장)		
4층	$411.92 m^2$	노동 허브, 노동자 건강증진센터		
5층	$270.94 m^2$	서울노동권익센터		
6층	$71.71 m^2$	회의실 및 휴게실		

- ※ 당초 계획상 노동복합시설 내 입주예정이던 "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"는 노동복합시설 내 공간 부족 등 지적사항을 수렴하여, 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 입주·이전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.
- 노동복합시설의 총 사업비는 237억 6,800만원으로, 시는 2017년 180억 6,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시설비 178억 4,100만원에는 건물매입비용 165억원, 정밀안전진단 3천만원, 실시설계 1억원, 리모델링비용 12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.

〈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총 사업비〉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사무관리	공공운영	민간위탁	시 설	감 리	시설부대
계	23,768	227	72	1,008	22,371	40	50
2017년	18,063	177	45	-	17,841	-	-
2018년 (요구)	5,705	50	27	1,008	4,530	40	50

2018년 시설의 예산은 총 57억 500만원으로, 이 중 민간위탁금
10억 895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.

〈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금 예산(안)〉

현 예산편성 내역: 1,008,195천원(민간위탁금)

① 인건비 : 188,191천원

- 기본급 : 107.478천원

▶ 관장1명(3,437천원x1명x6개월)20,622천원▶ 국장1명(2,816천원x1명x6개월)16,896천원▶ 팀원3명(2,120천원x3명x6개월)38,160천원

- 기타 제수당 : 46,274천원

▶ 팀원5명(2.120천원x5명x3개월)

▶관리자수당 500천원×1명(관장)×6개월+200천원×1명(국장)×6개월=4,200천원

31.800천원

▶ 명절휴가비 107,478천원÷6개월×60%=10,747천원

▶ 자격수당 200천원×3명×6개월=3,600천원

▶기말수당 107,478천원÷6개월×50%=8,957천원

▶가족수당 60천원×(5명×6개월+5명×3개월)=2,700천원

▶정액급식비 100천원×(5명×6개월+5명×3개월)=4.500천원

▶ 초과근무수당 107.478천원÷6개월÷209×1.5×15시간×6개월=11.570천원

- 기타 : 34,439천원 ※ 실제 인력 운용시 경력호봉 책정 등 대비금액

② 운영비 : 189,400천원

- 업무추진비, 4대 보험료, 일반수용비, 수선유지비, 제세공과금, 사무공간 임대료 등

③ 자산취득비 : 38,000천원

- 컴퓨터, 복합기 등

④ 보상비 : 176,000천원

- 기획전시 운영전시품 대여, 감정평가 등

⑤ 시설관리비 : 300,000천원

- 시설용역비, 수장고 관리, 시설비품 관리 등

⑥ 위탁대행수수료 : 36,604천원

- 분기별 지급,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

⑦ 사업비 : 80,000천원

- 현재 공고 중인 노동복합시설의 수탁기관은 4월 중 최종 선정될 계획이며 선정된 수탁기관은 입주기관 관리 및 시설의 총괄 관리와 전태일 기념관의 전시와 운영,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할 예정임.
- 시는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예정된 시기에 노동복합시설을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, 향후 전태일 기념관과 노동복합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·감독 이 요구되는 바임.

다. 서울시의 근로자복지시설 현황

- 동 조례에 따라 시는 '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', '서울특별시 강북 근로자복지관', '서울노동권익센터' 등 세 곳의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중으로, 2018년 근로자복지시설에 편성된 예산은 총 31억 6.373만원임.
- 이 중 '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'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·보수비로 2억 4천만원을, '강북 근로자복지관'에는 혁신파크 내 위치한 현 건물에 대한 관리비 1억2천만원을 지원중이며, '서울 노동권익센터'의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예산 약 28억원을 지원하고 있음.

〈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 개요〉

(단위 : 천원)

ス]설명	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	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	서울노동권익센터	
사	무내용	노동법률상' 교육사업 노동자 권익5	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보장 기반구축 민관협력 거버넌스구축		
수탁기관		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	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	한국비정규노동센터	
위치		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	은평구 통일로 684	종로구 율곡로 56	
예 산	2016	62,420	3,630,000	1,418,380	
	2017	1,924,675	1,120,000	2,863,324	
	2018	240,090	120,000	2,803,642	

- 한편, 올 하반기 개소예정인 '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'(이하 "감정노동센터")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¹)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, 동 조례에서는 따로 감정노동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.
- 그러나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분리·신설되는 감정노동센터 또한 시의 근로자복지시설 중 하나로, 향후 동 조례상의 근로자복지시설 명칭에 감정노동센터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¹⁾ 제21조(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라. 종합의견

- 다양한 시의 노동시설들의 집약, 전국 최초의 전태일 기념관 조성이라는 점에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개관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,이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시는 237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건물 취득을 통해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게 된 만큼, 동 시설이 공공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표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노력해야 함.
- 또한 노동복합시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산재해 있는 관련 노동 시설들과 연계하여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.
- 시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뿐만 아니라 동 조례에 따른 서울시 근로자복지관, 강북근로자복지관,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시의 근로자 복지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노동권이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할 것임.